

(앞면)

서 약 서

본인은 통장 지원 신청자로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I. 통장 지원 자격에 있어「군산시 이·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한다.
- II. 통장 재직 중에 「군산시 이·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촌동장에게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.
- III. 「군산시 이·통반 설치 조례」를 준수하고, 조촌동과 적극 협력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.

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거나 이행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진 사퇴 및 임명 제외, 해임 등 그 어떤 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통장 지원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붙임 사실확인서(뒷면) 1부

조촌동장 귀하

(뒷면)

사 실 확 인 서

※ 신청자 본인 작성

지 역	조촌동 통						
성 명		성별		생년월일		연락처	자 택)
주 소							휴대폰)
구 분	확인사항						본인확인란
이·통장 자격 해당여부 (규칙 제2조)	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						☐ 해당 ☐ 해당없음
	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 (※ 예외: 행정구역 조정 등)						☐ 해당 ☐ 해당없음
	지원 연령 25세 이상						☐ 해당 ☐ 해당없음
	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					☐ 해당 ☐ 해당없음
	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						☐ 해당 ☐ 해당없음
	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						☐ 해당 ☐ 해당없음
	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						☐ 해당 ☐ 해당없음
	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						☐ 해당 ☐ 해당없음
이·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·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					☐ 해당 ☐ 해당없음	

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됨이 확인
될 경우에는 자진 사퇴 및 임명 제외, 해임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대한
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통장 지원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